

# 규약정정주요내용

2011년 2월 24일

1. 정정대상 집합투자기구 : 대신 비타민 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
2. 정정대상 서류 : 집합투자 규약
3. 정정대상 서류 최초제출일 : 2009.04.17.
4. 정정사유 : 신탁업자 변경
5. 정정사항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<b>제1조 (신탁계약의 목적)</b>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,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대신자산운용(주)와 신탁업자인 <b>도이치은행 서울지점</b>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, 이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,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대신자산운용(주)와 신탁업자인 <b>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</b>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, 이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b>부 칙</b>	<< 신 설 >>	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규약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